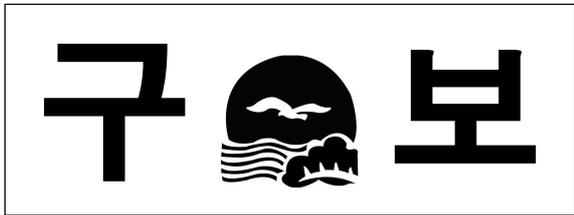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599 호

2013년 7월 22일 월요일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66호(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67호(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68호(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 ..... 15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69호(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24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70호(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71호(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72호(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73호(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 44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74호(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47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75호(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51

### 규 칙

-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792호(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운영 규칙) ..... 58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진흥실

**고 시**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3-66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61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3-67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65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47호(2013년도 2분기 임대조건 신고 공고) .... 67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49호(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69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51호(건축물대장 말소 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73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53호(유기동물 보호공고 및 보호의뢰) ..... 77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57호(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시정지시 공시 송달공고) ..... 79

**조      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김 흥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66호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이나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월미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기업체·공공기관 소속 임원

3. 비영리단체 소속 임원

4. 그 밖에 중구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67호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구민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수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

- 1. 사회봉사상
- 2. 효행상
- 3. 산업진흥상
- 4. 체육진흥상
- 5. 문화예술상
- 6. 교육공로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종류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 1. 사회봉사상

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사람  
 나. 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2. 효행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산업진흥상: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

4. 체육진흥상  
 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단체 또는 개인전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나. 구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사람

5. 문화예술상: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교육공로상: 교육사업 활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

제10조(이중수상 금지) 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상할 수 없다.

제11조(상패) 구민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15조(수상자의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해야 한다.

1. 구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의 초청
2. 사망한 때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추천서(제5조 관련)

1. 인적사항		사 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공 적 개 요		
<p>위 사람을 20    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수상 후보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추천인: ○ ○ ○ (서명 또는 날인)</p>		
<p><b>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b></p>		
<p>구 비 서 류</p> <p>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p>		

[별지 제2호서식]

구민상 수상자 대장(제14조 관련)

연 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시상부문	시상일자	비 고
						증명사진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기 위한 <u>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수상부문)</b> <u>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총 수상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봉사상</li> <li>2. 효 행 상</li> <li>3. 산업진흥상</li> <li>4. 체육진흥상</li> <li>5. 교육문화예술상</li> </ol> <p style="padding-left: 40px;">〈신 설〉 〈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u>현저한 구민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수상부문)</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수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봉사상</li> <li>2. 효 행 상</li> <li>3. 산업진흥상</li> <li>4. 체육진흥상</li> <li>5. 문화예술상</li> <li>6. <u>교육공로상</u></li> </ol> </li> <li>② <u>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종류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u></li> </ol>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수상대상자)</b>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u>인천광역시중구 구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u>로 한다. 단, <u>산업진흥상,교육문화예술상은 관내에서 활동실적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u></p> <p>1. 사회봉사상            가. <u>희생적인 봉사</u>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u>공헌하였거나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자</u>            나. 자선사업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건설에 <u>남다른 공헌을 한 자</u></p> <p>2. 효행상 : <u>충효정신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u></p> <p>3. 산업진흥상 :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등 지역산업 진흥에 공헌한 <u>자</u></p> <p>4. 체육진흥상            가. <u>전국대회 규모 이상에서 단체 또는 개인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자</u>            나. <u>구민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자</u></p> <p>5. <u>교육문화예술상</u> : <u>교육, 문화, 예술 분야 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세웠거나 기여한 자</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b>제3조(수상대상자)</b>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u>추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u>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p> <p>1. 사회봉사상            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과 <u>구민화합에 공헌한 사람</u>            나. 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u>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u></p> <p>2. 효행상: <u>어른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u></p> <p>3. 산업진흥상: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 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u>사람</u></p> <p>4. 체육진흥상            가. <u>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단체 또는 개인전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u>            나. <u>구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사람</u></p> <p>5. <u>문화예술상</u>: <u>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u></p> <p>6. <u>교육공로상</u>: <u>교육사업 활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u></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수상후보자)</b>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u>연명으로</u>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u>각급기관 또는 단체장에게</u> 수상후보자가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p> <p><b>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b>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u>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li> <li>2. 공적조서 1통</li> <li>3. 공적요약서 1통</li> <li>4. 이력서 1통</li> <li>5. 공적증빙서류 1통</li> </ol> <p><b>제6조(위원회의 구성)</b></p> <p>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u>호선한다.</u></p> <p>④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중에서</u>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p>	<p><b>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b>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u>연서로</u>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u>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u>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p> <p><b>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b>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u>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적조서 1부</li> <li>2. 공적요약서 1부</li> <li>3. 이력서 1부</li> <li>4. 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li> </ol> <p><b>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b></p> <p>①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서로 뽑는다.</u></p> <p>④ 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u>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u>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⑤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위원장의 직무)</b></p> <p>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은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중에서 2인 이상으로 조사위원을 위촉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8조(회의)</b></p> <p>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b>제9조(시상)</b></p> <p>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제10조(이중수상 금지)</b></p> <p>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상할 수 없다.</p> <p><b>제11조(부상)</b></p> <p>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p>	<p><b>제7조(위원장의 직무)</b></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8조(회의)</b></p> <p>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9조(시상)</b></p> <p>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p> <p><b>제10조(이중수상 금지)</b></p> <p>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상할 수 없다.</p> <p><b>제11조(상패)</b></p> <p>구민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b>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p>	<p><b>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b>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p>
<p><b>제13조(간사와 서기)</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서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p>	<p><b>제13조(간사와 서기)</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b>제14조(기록보존)</b>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p>	<p><b>제14조(기록보존)</b>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p>
<p><b>제15조(수상자의 특전)</b>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p>	<p><b>제15조(수상자의 예우)</b>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해야 한다. 1. 구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의 초청 2. 사망한 때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p>
<p><b>제16조(실비변상)</b>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16조(수당 등)</b>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68호

###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표창할 수 있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사회도의회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 ②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자는 제외한다.
- ④ 모범공무원 표창은 연 4회 시행하며, 1년에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절차)**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표창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표창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표창자를 결정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표창대상자(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표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표창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4조(표창통제)**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표창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5조(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6조(표창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제9조제1항 관련)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제9조제1항 관련)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상장(제9조제1항 관련)

제 호

상 장

○ ○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제10조 관련)**

(앞면)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성 명	(한자) (원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	③군 번(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등급(직급·계급)				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							⑫공적 분야코드			-			
⑬추 천 훈 격							⑭추 천 순 위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						
⑰직 급							⑱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⑰년 월 일	⑱이 력	(21)년 월 일	(22)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4)내 용	(25)년 월 일	(26)내 용
(27)공 적 사 항			

표창대상(제1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호수	표창 년월일	표창종별	표창기관	수 상 자					표창을 하게 된 공적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비고
				직위·직명	성명	소속·주소	생년월일	성별			

1. 표창대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기록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기록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69호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어 문화체험교실"이란 중국어권 문화체험과 중국어 학습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차이나타운 지역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개항장 문화체험교실"이란 근대역사 문화체험과 근대역사 교육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소재 개항장문화지구 지역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화체험교실"이란 중국어 문화체험교실 및 개항장 문화체험교실을 말한다.
4. "어학·문화강좌"란 문화체험교실 중 언어 또는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2장 설치와 운영계획

**제3조(설치)**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이하 “문화체험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험교실은 한중문화관 등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구 소재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계획)** 구청장은 해마다 문화체험교실의 종류 및 운영방법 등을 포함한 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3장 이용료

**제5조(납부)** ① 문화체험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참여 신청과 함께 별표 1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6조(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별표 2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 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2.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3. 어학·문화강좌를 중복하여 수강하는 사람
4. 한어수평고시(HSK)에서 해당 반 급수에 합격한 사람

**제7조(반환)** ① 구청장은 문화체험교실의 이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운영자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이용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서면으로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어학·문화강좌의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 전액(다만, 이용예정일 이후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 그 예정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이용료를 말한다) 반환
4.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전액 반환

#### 제4장 관리 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체험교실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험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외부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체험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그 밖에 위탁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처리 실적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문화체험교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한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3. 프로그램이 끝난 후 1개월 내에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위탁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 다만, 구청장이 손실 및 손해에 대비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재위탁 및 대리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권리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지사유 및 일자를 그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및 관련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확인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 요구,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4조(준용)** 문화체험교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

을 수탁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1항의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및 운영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의 “중국어마을(프로그램 운영을 말한다)”을 “문화체험교실 운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문화체험교실 이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명	금 액	비 고
어린이문화체험교실	1명마다 10,000원	
토요문화체험교실	1명마다 5,000원	
어학강좌	- 초등학생반 60,000원(분기별) - 기초·초급·중급반 45,000원(분기별) - 고급반 60,000원(분기별)	※ 신규 강좌를 개설할 때 수준별 30,000~60,000원 으로 책정(분기별)
문화강좌	- 중국문화반 30,000원(분기별) - 중국악기반 60,000원(분기별)	

[별표 2]

문화체험교실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6조제2항 관련)

프로그램명	금 액	비 고
어린이문화체험교실	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 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 50퍼센트 감경	
토요문화체험교실	구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50퍼센트 감경	
어학·문화강좌	- 구민 50퍼센트 감경 - 중복 수강 시 15,000원 감경(분기별) - 한어수평고시(HSK)에서 해당 반 급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분기의 수강료 전액 면제	※ 구민은 중복 수강할 때 감경 제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70호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4조제2호를 제4조제3호로 하며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4조제5호로 한다.

제9조제2호 가목 및 제3호가목, 제4호 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세율)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소유권의 보존</u>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u>&lt;신설&gt;</u></p> <p>2. <u>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u></p> <p>가. <u>지상권</u>: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p> <p><u>&lt;단서 신설&gt;</u></p> <p>나. ~ 마. (생략)</p> <p>3.·4. (생략)</p>	<p>제4조(세율) -----</p> <p>-----.</p> <p>1. <u>소유권의 보존 등기</u> : -----</p> <p>-----</p> <p>2. <u>소유권의 이전 등기</u></p> <p>가. <u>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u>: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p> <p>나. <u>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u>: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u>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u></p> <p>3. -----</p> <p>-----</p> <p>가. -----</p> <p><u>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u></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4.·5. (현행 3호 및 4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생략)</p> <p>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 다. (생략)</p> <p>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략)</p> <p>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생략)</p> <p>5. (생략)</p> <p>제11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p> <p>①·② (생략)</p> <p>제12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p>	<p>제9조(세율) ----- -----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 ----- ----- -----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주택 가. 법 13조제5항----- ----- ----- 나. (현행과 같음)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 -----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도시지역분) ----- ----- 도시지역분----- ----- -----</p>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71호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982호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제2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제982호)</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p> <p>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제982호)</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적용시한) ----- -----, --, 제2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제3조(현행과 같음)</p> <p>제4조(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72호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별표 1】

## 제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 1. 각종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b>1. 사실에 관한 증명</b>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건	500	
<b>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b>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	
(2)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300	
<b>3. 지방세에 관한 증명</b>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	
<b>4. 회계에 관한 증명</b>			
(1)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3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통	300	
(3)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00	
(4)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	
<b>5. 기타 제증명</b>			
(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필지	800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4)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	

## 2.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b>1. 일반행정관계</b>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	1건	5,000	
-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1건	600	
(3) 개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	
(4) 법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30,000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6)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7)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신설]	1건	6,000	
(8)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신설]	1건	800	
<b>2. 문화공보관계</b>			
(1) 공연장 등록 <개정>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 등록 <개정>	1건	5,000	
(3) 영화상영관 등록<개정>	1건	20,000	
(4)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개정>	1건	10,000	
(5) 일반게임제공업 허가<개정>	1건	20,000	
(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개정>	1건	5,000	
(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개정>	1건	20,000	
(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개정>	1건	5,000	
(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개정>	1건	20,000	
(1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개정>	1건	5,000	
(11) 노래연습장업 등록<개정>	1건	20,000	
(12)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개정>	1건	5,000	
(1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개정>	1건	20,000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개정>	1건	5,000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개정>	1건	20,000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개정>	1건	5,000	
(17)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개정>	1건	20,000	
(18)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사항 변경 <개정>	1건	5,000	
(19)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신설]	1건	20,000	
(20)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설]	1건	5,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2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60,000	
(2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개정>	1건	50,000	
(2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	
(2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0	
(25)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26)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27)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8)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2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개정>	1건	20,000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 변경<개정>	1건	10,000	
(31) 영화업 신고	1건	20,000	
(32)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3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설]	1건	5,000	
(34)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1건	20,000	
(35)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b>3. 지적 · 건축 · 건설 및 도시계획관계</b>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1건	500	
- 토지도면	1건	300	
- 건물도면	1건	100	
(2) 건축물 수기대장 열람	1건	300	
(3) 건축물관리대장(말소포함) 등본	1건	500	
(4) 토지분할 허가	1건	600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	
(7)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	
(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9)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300	
(10)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300	
(11) 환지예정지 변경(분할·합병)신청	1필지	300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필지	1,000	
※ 칼라 발급	1필지	1,500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1건	5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b>4. 보건사회관계</b>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신고	1건	40,000	
(2)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	
(3) 안경업소 개설 등록<개정>	1건	15,000	
(4)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개정>	1건	15,000	
(5)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건	300	
<b>5. 수산업관계</b>			
(1) 연안어업 허가신청 <개정>	1건	3,000	
(2) 구획어업 허가신청 <개정>	1건	4,500	
(3) 어장시설물철거 의무면제(연장) 신청<개정>	1건	3,000	
(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	
(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	
(6)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	
(7) 어업신고	1건	1,600	
(8)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5,000	
(9)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10) 어업면허신청	1건	5,500	
(11) 어업면허연장허가 신청 <개정>	1건	3,000	
(12) 어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	1건	5,000	
(13) 어업권분할 인가신청 <개정>	1건	2,500	
(14) 어업권변경 인가신청 <개정>	1건	3,000	
(15)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	
(16)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	
(17) 어업개시신고	1건	1,000	
(18)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해제 허가 신청	1건	1,500	
(19) 어업면허증·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20) 어업권원부 열람 신청	1건	800	
(21) 어업권원부 등(초)본 교부신청	1건	800	
(22)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1건	1,500	
(2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1건	500	
(24)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1,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25)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500	
(26)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1,600	
(27)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800	
(28)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2,000	
(29)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1,000	
(30)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개정>	1건	4,000	
(3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 정치망어업) [신설]	1건	9,000	
(3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용) [신설]	1건	7,500	
(33)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신설]	1건	5,000	
(34) 내수면어업 신고 [신설]	1건	1,000	
(35) 내수면어업 면허 연장허가 신청 [신설]	1건	5,000	
(36) (허가)어업 휴업신고 [신설]	1건	1,000	
(37) (허가)어업 휴업 연장신고 [신설]	1건	800	
(38) (허가)어업 재개 신고 [신설]	1건	1,000	
(39)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설]	1건	1,000	
(40)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신설]	1건	800	
(41) 어업면허 공동 신청사항 신고 [신설]	1건	1,000	
(42)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신설]	1건	1,000	
(43) 변경사항 신고 [신설]	1건	1,000	
(44) 어업권 포기 신고 [신설]	1건	1,000	
(45) 어업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 재발급 신청 [신설]	1건	1,000	
(46) 관리선사용지정사항 변경신청 [신설]	1건	1,000	
(47) 어업권등의 보상 청구 [신설]	1건	2,000	
(48) 낚시어선업 신고 [신설]	1건	2,500	
(4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 <개정>	1건	2,000	
(50)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 <개정>	1건	1,000	
(51)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개정>	1건	2,000	
(52)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개정>	1건	1,000	
(53) 어선등록신청 [신설]	1건	3,000	
(54) 어선의 변경등록신청 [신설]	1건	3,000	
(55) 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신설]	1건	1,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b>6. 석유판매업 관계</b>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	
<b>7. 농업관계</b>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b>8. 교통관계</b>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설]	1건	6,000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징수방법)</b> ① 수수료는 <u>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u> 다만 <u>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u></p>	<p><b>제6조(징수방법)</b> <u>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u></p>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73호

###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 수입을 말한다.
2.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전자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해당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 ① 전자증지는 그 인영(印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

1. 금액
2. 발행기관(구를 말한다)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증지에 대하여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규격 및 모양)** ① 전자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규격의 전자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이 항에서 “금고”라 한다)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전자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전자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전자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전자증지수입 일일 결산대장(제6조제2항 관련)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단위: 매, 원)

증명서 종류	금액	금일발행(A)		금일결손(B)		금일실발행(A-B)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일계							
전일월계							
금일월계							
전일연계							
금일연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74호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 받고자 하는 대규모

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등을 말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한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구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b>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의한다.</p>	<p><b>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b> 구 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b>제15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b>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 소재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p> <p>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p>	<p><b>제15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b>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등을 말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다시 명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구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등을 말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구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설치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075호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② "분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③ "지역정압기"란 분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④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 ⑤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⑥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⑦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 ⑧ "보조사업자"란 신청자 중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받기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구청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연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으로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약이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기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 ②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면 그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보조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출된 보조금 지원요청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지역

-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 3.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사용범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제12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보조사업자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현 주소	(전화 : )		
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중구	로( 동)	번길
		공사종점 : 중구	로( 동)	번길
⑦배관연장		M		
⑧계좌번호(은행명)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규 칙**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792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위촉)** 문화체험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강사의 평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수시로 평가하여 위촉기간을 연장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제2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활동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6조(강사수당 지급시기)** 강사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되,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한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이 규칙에 따른 강사로 보며, 그 위촉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문화체험교실 강사 자격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체험강사	-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보조강사	- 중국 원어민 대학(원)생 - 관련 학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어학·문화강사	-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학과 전공자 -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문화체험교실 강사수당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체험강사	보조강사	기타 전문강사
시간당	25,000 (15,000)	10,000 (5,000)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 지급기준은

- ① 1~6시간: 시간당 기준금액 적용
- ② 1일 6시간 초과 시: 추가 시간당( )금액 적용

[별표 3]

**어학·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초등학생반	기초, 초급, 중급	중국악기	고급	중국문화
시간당	30,000	35,000		40,000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3-6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7. 12.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외 23건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일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032)760-7825~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07.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붙임2. 도로명 주소 별도 열람

순 번	지번주소 (예정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2 영중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중산동, 영중초등학교)	직권	2013. 04.26	하늘도시를떠올려이 미지를부각시키는우 리말로로이름반영
2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3 우미린2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중산동,우미린2단지아파트)	직권	2013. 04.26	하늘도시를떠올려이 미지를부각시키는우 리말로로이름반영
3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5 영중LH7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중산동, 영중LH7단지아파트)	직권	2013. 04.26	은하수를볼수있는친 환경도시로의이미지 부각시키는우리말로 로이름반영
4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2-1 신명스카이뷰주얼 리아파트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95 (중산동, 신명스카이뷰주얼리아파트)	직권	2013. 04.26	하늘도시를떠올려이 미지를부각시키는우 리말로로이름반영
5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2-2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65 (중산동, 동보노빌리티아파트)	직권	2013. 04.26	하늘도시를떠올려이 미지를부각시키는우 리말로로이름반영
6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8-1 한양수자인아파트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77 (중산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직권	2013. 04.26	은하수를볼수있는친 환경도시로의이미지 부각시키는우리말로 로이름반영
7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0-3 하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3 (중산동, 하늘초등학교)	직권	2013. 04.26	은하수를볼수있는친 환경도시로의이미지 부각시키는우리말로 로이름반영
8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1-1 우미린1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중산동, 우미린1단지아파트)	직권	2013. 04.26	은하수를볼수있는친 환경도시로의이미지 부각시키는우리말로 로이름반영
9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7-1 영중 한라비발디아파트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86 (중산동, 영중한라비발디아파트)	직권	2013. 04.26	하늘도시를떠올려이 미지를부각시키는우 리말로로이름반영

순 번	지번주소 (예정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10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7-2 힐스테이트아파트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66 (중산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직권	2013. 04.26	하늘도시를떠올려이 미지를부가시키는우 리말로이름반영
11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117-3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로87번길 40-27 (중산동)	신청	2009. 02.24	중산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50-30	인천광역시 중구 마장포로 89-11 (중산동)	직권	2009. 02.24	조선시대 국영으로 군마를 기르던 곳이 있어서 마장포라 불리웠던 자연지명을 활용
13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50-404	인천광역시 중구 마장포로 89-9 (중산동)	직권	2009. 02.24	조선시대 국영으로 군마를 기르던 곳이 있어서 마장포라 불리웠던 자연지명을 활용
14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879-13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177번길 27-8 (중산동)	직권	2009. 02.24	운중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880-1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177번길 33-1 (중산동)	직권	2009. 02.24	운중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중구 운남동 1655-12 영종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남디로 92 (운남동, 영종중학교)	직권	2013. 04.26	백운산을 기점으로 남쪽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남디 마을 불린 옛지명 반영
1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93, 194-1, 194-11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82번길 28 (운남동)	신청	2009. 02.24	운남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696-9	인천광역시 중구 은골로 30-1 (운서동)	직권	2009. 02.24	옛날 산림이 하도 울창해 마을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불려진 자연지명 활용

순 번	지번주소 (예정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19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7 에잇에르메스(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5 (운서동, 에잇에르메스(주))	신청	2009.02 .24	영종도 남쪽에 위치한 도로로서 도로의 방위 및 해안도로라는 점을 활용
20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103-8 영종고등학교	인천광역시중구 영종대로278번길 34 (운서동, 영종고등학교)	직권	2013. 04.26	영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103-9 영종 LH1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중구 영종대로278번길 50 (운서동, 영종LH1단지아파트)	직권	2013. 04.26	영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734-1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451 (운북동)	신청	2009. 02.24	백운산에서부터 금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영종의 진산인 백운산의 이름을 활용
23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734-11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451-1 (운북동)	신청	2009. 02.24	백운산에서부터 금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영종의 진산인 백운산의 이름을 활용
24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735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453 (운북동)	신청	2009. 02.24	백운산에서부터 금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영종의 진산인 백운산의 이름을 활용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3-67호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7. 12.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17-20 외 3건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도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랍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새주소관리팀(☎ 032)760-7825~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07.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붙임2.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별도 열람

지번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450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37-7 (중산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17-20 (중산동)	주출입구 변경	2009. 02.24	운남동에서 중산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활용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272-1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14번길 18 (중산동)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14번길 28-15 (중산동)	종속도로구간 생성에 따른 변경	2009. 02.24	백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 195-3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77번길 12 (중산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177번길 12-1 (중산동)	건물군 분할	2009. 02.24	운중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536-3	인천광역시 중구 전소로1번길 32 (운남동,하늘빌리지)	인천광역시 중구 전소로 28 (운남동, 하늘빌리지)	연결선 오류	2009. 02.24	백운산전면에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하여 전소라 불리운 자연지명 반영

<b>공 고</b>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47호

### 임대조건(변경) 신고 공고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2분기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07. 16.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07. 16 ~ 2013. 08. 15

2. 임대 조건 신고 내용

① 매입임대사업자

사업자	임대주택소재지	주택유형	면적(m <sup>2</sup> )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원)	임대료(월)	
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2-1번지	아파트	59.619	75,000,000	0	20130626~20150625
명**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1-1번지	아파트	59.94	55,000,000	0	20130626~20150625
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1-1번지	아파트	59.96	50,000,000	0	20130531~20150530
천**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4-8번지	준주택	40	5,000,000	350,000	20130419~20140419
장**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07번지	아파트	125.68	15,000,000	500,000	20130501~20140430
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2-1번지	아파트	57.019	5,000,000	280,000	20130520~20150519
장**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2-1번지	아파트	59.619	60,000,000	0	20130520~20150519
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48-1번지	아파트	59.99	50,000,000	0	20130521~20150520

사업자	임대주택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원)	임대료 (월)	
청성**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07번지	아파트	52.46	20,000,000	100,000	20130530~20150530
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7-2번지	아파트	83.247	90,000,000	0	20130227~20150226
이**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48-10번지	다세대	59.87	7,000,000	400,000	20130420~20150419
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2-1번지	아파트	57.016	70,000,000	0	20130401~20150331
박**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1-1번지	아파트	59.96	40,000,000	0	20130419~20150419
오**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90-9번지	아파트	35.04	20,000,000	0	20130319~20150318
박**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8-1번지	아파트	59.1006	5,000,000	200,000	20130323~20140322
				5,000,000	200,000	20130323~20140322

소관부서	건축과	직 · 성명	지방시설주사보 전용우	전화번호	760-7527
------	-----	--------	----------------	------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49호

##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취 지

기존 클린하우스 2개소와 2013년도 클린하우스 신규 1개소 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13. 7. 16 ~ 8. 5(20일간)

4.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http://www.icjg.go.kr>)

####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나. 사 유 :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다. 설치규모 :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6대 설치(개소당 2대)

라. 설치장소 : 중구 항동7가 58-20 다홍탑스빌 옆(클린하우스)의 2개소  
(붙임1 참조)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클린하우스 내 24시간 연중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소과 ☎032-760-7415)

####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 7. 16 ~ 8. 5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 팩스 : 032-760-7819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중구청 청소과 (☎032-760-7415)

## 【붙임 1】

##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장소

연번	지역	설치 지역	비고
1	연안동	중구 향동7가 58-20 【다홍탑스빌라 옆】	기존 클린하우스 내 CCTV 2대 설치
2	율목동	중구 율목동 245-1 【한진빌라 옆】	기존 클린하우스 내 CCTV 2대 설치
3	영종동	중구 운북동 127-9 【금산경로당 옆】	신규 클린하우스 내 CCTV 2대 설치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51호

## 건축물대장 말소 예고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건축물에 대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토지 이동정리 사항에 따른 말소 지번의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존재에 따른 (직권)말소 하기 위하여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코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거소를 확인 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의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7. 17. ~ 2013. 7. 31.(14일간)
2.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3. 7. 31.
4.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불임 참조					
	주소	불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에 따른 부존재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b>건축물대장 직권 말소</b>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바.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박경미
		주소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전화번호	760-7485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760-7479
	제출기한	2013년 7월 30일까지					

4.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대상 현황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13. 7. 17.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붙임】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대상 현황

연번	소유자	대지위치	층수	주구조 (지붕)	주용도	연면적 (㎡)	비고
1	이정호	내동 83-31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제1종근린 생활시설	114.6	83-1번과 합병으로 지번말소(2002.08.28) 및 대상 건축물 부존재
2	이복흙	내동 159	지상 1층	목조 (아연집)	주택	11.44	160번과 합병으로 지번말소(1985.11.09) 및 대상 건축물 부존재
3	정동순	내동 12-4	지상 2층	연와조 (세멘와집)	영업소	44.04	12-16번 분할(1968.04.10), 12-3번과 합병되어 말소(1988.05.03) 및 대상 건축물 부존재

[별지 제11호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비<br>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br>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br>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주택건축팀
  - 연 락 처 : 032) 760-7485. 끝.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53호

### 유기동물보호공고 및 보호의뢰

동물보호법 제17조 및 인천광역시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반환청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 7. 16.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공고기간:2013.7.16~7.26

2. 유기동물발생현황

공고 번호	품종	모색	포획장소	포획 일시	연령	체중	성별	건강 상태	특징	비고
인천-중구-2013-00194	고양이	노랑+ 흰색	신흥동1가단 독주택	2013-07-09	4개월 추정	1.20(kg)	수컷	치료요함	잘먹지못하고,겉에 질러꼼짝도안함	공고완료
인천-중구-2013-00195	믹스견	노랑 (포메라니안 믹스)	태화버스주차장앞	2013-07-09	3살 추정	5.00(kg)	암컷	치료요함	기관지가안좋아기침하고호흡이거칠음	공고완료
인천-중구-2013-00196	믹스견	흰색+ 옅은살색	차이나게이트 근처단독주택	2013-07-10	45일 추정	2.00(kg)	수컷	양호	비교적양호한것으로 사료되나,밥먹는것이우려됨	공고완료
인천-중구-2013-00197	믹스견	흰색+ 옅은살색	차이나게이트 근처단독주택	2013-07-10	45일 추정	1.20(kg)	수컷	양호	비교적양호한것으로 사료되나,사료를잘먹을지걱정됨	공고완료

공고 번호	품종	모색	포획장소	포획 일시	연령	체중	성별	건강 상태	특징	비고
인천- 중구- 2013- 00198	믹스견	흰색+ 엷은 살색	차이나게이트 근처단독주택	2013- 07-10	45일 추정	1.20 (kg)	수컷	양호	비교적양호한것으로 사료되나,먹는것이 우려됨	공고 완료
인천- 중구- 2013- 00199	믹스견	노랑색	금산레이더기지	2013- 07-12	2살 추정	20.00 (kg)	암컷	치료 요함	꼬리가잘려있고,굉 장히사나움,계속으 르렁대고,물려고함	공고 완료
인천- 중구- 2013- 00200	치와와	노랑+ 흰색	인천여상앞	2013- 07-13	14살 추정	4.50 (kg)	암컷	치료 요함	이다빠지고,양눈백 내장,귀양쪽과몸전 체피부병심함,호흡 이거칠고기침	공고 완료

## 3. 유의사항

-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동안 동물의 포획,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동물보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중구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애호가에 기증하거나 도태처리(안락사)됩니다.
- 유기동물을 분양 받고자 하는 동물애호가는 2013. 7. 26일까지 경동동물병원(765-99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동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657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7. 22.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아 래 -

- 처분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시정지시
- 공고기간 : 2013.07.22.~2013.08.06.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시정대상 가설건축물 현황

연 번	신고번호	대지위치	건축주	존치기간	미연장 가설건축물 내역			비고
					구조	용도	연면적 (㎡)	
1	2011-건축과-가신-112	신흥동3가 29-8	조규현	2013.06.15.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32	
					파이프 천막	임시창고	268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2013.08.05.(월)까지 스스로 정비하도록 통보하는 사항이며,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1년에 2회 범위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32-760-7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